

2026년도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통합 공고

뿌리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뿌리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뿌리기업 명가'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뿌리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2026년도 뿌리기업 명가 선정』 공고

1. 개 요

- (목적) 뿌리산업에서 代를 잇는 전통 확산을 위해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명가(名家)로 선정
 - 명가기업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도모함
- (근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2. 자격요건 및 선정내용

가. 신청 자격

-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
 2.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3.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

<동일성 유지기준>

- ①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나. 선정 혜택

- 명가 선정증, 현판수여, 뿌리기업 지원 사업 가점 및 뿌리산업 발전 유공 단체부분 추천 등의 기업 지원

【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 혜택 】

- ①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현판수여
- ② 뿌리 AI공정 시스템 구축사업(가점)
- ③ 최우수 명가기업 대상 뿌리산업 발전유공 단체부분(대통령, 국무총리 포상대상)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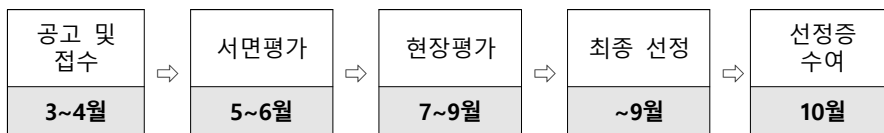
다. 제한 요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사망산재 발생, 임금체불 및 사업체 불법운영 등이 확인되는 기업

3. 평가 일정 및 기준

가. 평가 일정

-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에 따른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붙임1)

구 분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선정
평가항목	업력 / 기술 / 경영	현장실태조사	서면,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
대상	접수분 전부	서면평가 70점 이상 기업	서면 평가 70점 이상 기업 중 현장평가 적합기업 선정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3. 23(월) ~ 2026. 4. 22(수) 18:00
- 신청양식 : 산업통상부(www.motir.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 접수 후 E-mail (sm0502@kitech.re.kr)로 자료 스캔본 송부 필수

송부서류	파일형태
신청서 및 공적조서	한글
추천서 및 기타증빙	PDF

접수처	주소	담당부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우)0621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뿌리산업진흥실 (02-2183-1645)

- 문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E-mail : sm0502@kitech.re.kr / Tel : 02-2183-1645)
 -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Tel : 044-203-4907)

나. 제출서류(①~⑤ 필수, ⑥~⑧ 해당시 제출)

- ① 뿌리기업 명가 신청서 및 기업추천서 3부
- ② 공적조서(포상 동의서 포함, 향후 뿌리산업 발전유공자 단체부분 추천에 활용)
 - ※ 공적조서는 반드시 기업이 보유한 기술, 업력 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 단순 기술의 나열이 아닌 대표기술의 개요, 산업계 파급효과, 개발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 필요
- ③ 최근 3년 재무제표, 원천징수부 각 1부(원천징수부는 최근 3년 중 매해 12월 사항만 제출)
- ④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⑤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기업체 사항 제출)
- ⑥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상장회사에 한정)
-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증빙서류(해당시)
- ⑧ 기타 관련 증빙자료 각 1부(해당시)
 - ※ 지식재산권,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수출)실적 증빙서, 상벌사항, 7년 이상 재직자 명단 등

※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뿌리산업 발전 유공자(단체부분)로 추천되는 기업의 경우 「상훈법」, 「202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하여 운용

붙임1

뿌리기업 명가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지 표
업 력 평 가	가업승계	○ 가업승계를 받은 경영자의 근무 년 수
	업 력	○ 기업 경력 - (업종 변경 된 경우) 변경 시점부터 계산 - (업종 추가 된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이 전체의 49%이하의 경우만 인정
	발전가능성	○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 추천서에 기재된 기업의 청렴도, 평판도 및 관련 산업기여도
기 술 평 가	기술 혁신성	○ 연구개발 전담부서 운영 ○ 외부 기술지원기관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 등
	기술 사업성	항목 지수 ○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 - 국내외 공인규격 : KS, UL, JIS, ISO관련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CC, GQ 등)
		가산 점수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기술 우수성	항목 지수 ○ 벤처기업, INNO-BIZ기업 또는 녹색인증기업, 환경인증마크(E, ECO) 해당여부 ○ 공인 수상경력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 (벤처기업대상, 우량기업)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실적 ○ 기업 보유기술의 산업계 보급 확산 가능성 ○ 기업 대표기술의 산업파급성 및 국가핵심기술 연계성 여부
		가산 점수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 신기술상, NET, NEP 해당 여부
	기술 집약성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기술개발) 투자비율 ○ 직전년도(기술개발) 투자 증가율
		○ 직전년도 부채비율
경 영 평 가	재 무 상 태	안정성 ○ 직전년도 유동비율
		성장성 ○ 전기/당기 매출증가율 ○ 전기/당기 총자산증가율
		수익성 ○ 직전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
	수출액 규모	○ 직전년도 수출액 규모 (2025년 간접적 수출액 규모 포함)
	일자리 기여도	○ 상시 근로자수(2025년 말)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 상시 근로자중 7년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2025년 말 기준, 전직원 대비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가점(3)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 기업의 경우 가산점
현 장 평 가	기술	○ 기술혁신 능력 ○ 기술사업화 능력 ○ 기술의 우수성 ○ 기술의 집약성 ○ 기술의 마케팅 능력
	경영	○ 핵심역량 개발 및 유지 ○ 조직 활성화 ○ 윤리적 경영 ○ 인적자원 개발 ○ 비전 전략적 방향 제시

* 공고일 기준 최근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함

『2026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공고

1. 개 요

- (목적) 근무·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홍보함으로써 뿌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 (근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 자격요건 및 선정내용

가. 신청 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뿌리기업**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나. 선정 혜택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 현판 수여, 지원사업 가점 등의 기업 지원

다. 제한 요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사망산재 발생, 임금체불 및 사업체 불법운영 등이 확인되는 기업

3. 평가 일정 및 기준

가. 평가 일정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진행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최종 선정	⇒	선정증 수여
3~4월		5~6월		7~9월		~9월		10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붙임1](#))

구 분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선정
평가항목	근로복지 / 경영/ 기술	근로환경/ 기업경영/ 미래역량	현장평가 결과 적합 기업
대상	접수분 전부	서면평가 60점 이상 기업	현장평가 70점 이상 기업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3. 23(월) ~ 2026. 4. 22(수) 18:00
- 신청양식 : 산업통상부(www.motir.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인터넷(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홈페이지) 접수
- 문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E-mail : sm0502@kitech.re.kr / Tel : 02-2183-1645)
 -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Tel : 044-203-4907)

나. 필수 제출서류

- 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기업현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③ 기업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④ 전년도 월별 임금 대장(엑셀파일)
- ⑤ 최근 3년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고일 기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보수총액 신고내역 조회' 엑셀파일 다운로드)
- ⑥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공고일 기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엑셀파일 다운로드)
-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명세서 필수포함)
- ⑧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 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 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⑪ 기타 관련 증빙자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는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 복지·기술설명서(직접생산 및 연구), 부대 시설사진 등 각종 증빙자료

※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기업현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붙임1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세부 평가항목

구분		평 가 지 표				
서면 평가	근로 복지 · 경영	근로·복지	근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율○ 평균 임금수준○ 신입사원 임금수준○ 초과 근로시간	최근3년 산업재해 확인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 전년도 신입사원 1인당 평균임금 주당 근로시간	
			복지 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 복리후생○ 복지시설	1인당 복리후생 비용 시설 개수(휴게공간, 체육시설 등)	
				고용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사자 이직률○ 장기근속자 비율	근속 3년미만 근로자 퇴사비율 7년 이상 재직자 비율
			성장성		○ 수익성, 매출증가율, 부채비율, 인적자원 개발비용 투자 등	
		기술	기술혁신성	○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직 편성,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등		
			기술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 또는 지식재산권 - 국내외 공인규격 : KS, UL, JIS, ISO관련 등-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CC, GQ 등)		
			기술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INNO-BIZ기업, 녹색인증기업, 환경인증마크(E, ECO)○ 공인 수상경력 및 성공사례 기업 선정(벤처기업대상, 우량기업)		
		가점	뿌리기술 전문기업 (5)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 기업의 경우 가산점		
		현장 평가	근로·경영	근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접근성, 기초 고용질서 준수여부, 노사관계, 근무환경 및 복지시설 운영, 근로조건, 청년인력 친화 등	
	기업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리더십, CEO비전, 임원역량, 인적자원 개발,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기여, 대외적 기업인지도 및 홍보실적 등		
기술	미래역량		○ 기술개발 및 인증, 보유 뿌리기술 우수성, 기업 성장가능성 등			